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

- 1 |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**
  -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구성원(배우자 포함)인 자.  
※ 단, 2018.12.11.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
- 2 | 신청유형 확인 필수!**
  - 소득 100% 이하(맞벌이 120%) - 우선공급 50%
  - 소득 140% 이하(맞벌이 160%) - 일반공급 20%
  - 소득 160% 초과 - 추첨제 30%
  - (부동산가액 3.31억 이하 충족)
  - 「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」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.
  - '21.11.16. 개정된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(30% 물량)가 신설되었습니다.  
※ 단, 부동산 가액(토지 : 공시지가, 건축물 : 시가표준액) 3.31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
- 3 |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**
 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

## 공급유형별 청약 자격조건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</li> <li>•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) 이하인 분 (단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)은 소득우선공급(70%) 자격으로 신청가능</li> <li>-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억3,100만원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(30%) 자격으로 신청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선배정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</li> <li>-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 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</li> <li>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기준(우선·일반)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li>• 순위산정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순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(「민법」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,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)가 있는 경우 (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)</li> <li>- 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/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2018.12.11. 시행) 부칙 제5조(상기 “청약자격” 참조)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•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주택건설지역(강릉시) 6개월 이상 거주자</li> <li>2.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(임신,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)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</li> <li>3.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</li> </ol> </li> </ul>

##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	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
소득 기준 구분	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6,509,452원	~7,622,056원	~8,040,492원	~8,701,639원	~9,362,786원	~10,023,93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120% 이하	6,509,453원 ~7,811,342원	7,622,057원 ~9,146,467원	8,040,493원 ~9,648,590원	8,701,640원 ~10,441,967원	9,362,787원 ~11,235,343원	10,023,934원 ~12,028,720원
	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140% 이하	6,509,453원 ~9,113,233원	7,622,057원 ~10,670,878원	8,040,493원 ~11,256,689원	8,701,640원 ~12,182,295원	9,362,787원 ~13,107,900원	10,023,934원 ~14,033,506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160% 이하	7,811,343원 ~10,415,123원	9,146,468원 ~12,195,290원	9,648,591원 ~12,864,787원	10,441,968원 ~13,922,622원	11,235,344원 ~14,980,458원	12,028,721원 ~16,038,293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113,234원~	10,670,879원~	11,256,690원~	12,182,296원~	13,107,901원~	14,033,507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10,415,124원~	12,195,291원~	12,864,788원~	13,922,623원~	14,980,459원~	16,038,294원~	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 ~ 160% 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 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 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: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+(1인당 평균소득(661,147)*(N-8), 100% 기준)[N : 9인 이상 가구원수] ※ 가구원수 산정기준 :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									
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